

CNSA News and Views

CNSA 뉴스와 전망

Franciscan Life in the 21st Century

21 세기 프란치스코 회원의 삶

Lester Bach OFM Cap

Some Fundamentals

몇가지 원칙

인간사안에서 상황은 변화한다. 의회에서는 의원들의 사고방식이 다양하고 각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한다. 교회에서는 신자들이 가톨릭교회에 대한 여러가지 견해를 갖고 저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한다. 가정에서는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주장을 고집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경시하는데, 그 반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각자는 자기가 옳다고 믿는다.

여기에서 공통적인 맥락은 아마도 우리가 상호 경청하여, 동의는 하지않더라도 잠시라도 타인의 생각을 정보의 출처로서 듣고 이해하려고 노력 하지 않음 (내키지 않음?)에 있다. 경청하지않음은 "다른" 개인이나 그룹의 생각을 이해하려고 관심을 갖지않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프란치스코는 예의와 배려와 존경심을 보인다. 이러한 각기 다른 자질은 우리와 다를지 모르는 경험과 생각을 우리가 이해해야한다고 요구한다.

재속 프란치스코회 (OFS)의 영적보조자에 대한 의견들이 있다. 재속 프란치스코 회원이나 그외 다른 사람들은 영적보조자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갖고있는데, 이러한 의견은 종종 상반된다. 교회와 프란치스코 가족의 문서와 관행에 따른 도움이될만한 의견들을 아래에 열거한다.

1. 영적보조자는 재속회를 '돕는데' 있어서 1 회/월수 3 회 (1st Order/TOR)를 대표한다. 어디에서 그 권위가 나오는지 역사를 살펴봅시다.

니콜라스 4 세 가 1288 년 2 월 15 일에 첫번째의 프란치스코 교황이 되었다. 프란치스코 회개자들(최초의 재속 프란치스코회 명칭)과 그밖의 사람들로 부터 그들의 회칙을 승인해달라는 성화에 못이겨 교황은 1289 년 8 월 18 일에 그들을 위한 회칙을 반포하였다. 흔히 그렇듯이 회개하는 자들과 수도자들도 이 회칙에 별로 만족하지 못했다.

니콜라스 교황은 수사들을 형제회의 방문자로 임명했다. 1 년후인 1290 년 8 월 18 일에 니콜라스 교황은 더 강력한

2013 겨울

문서인 Unigenitus Dei Filius (하느님의 외아드님)를 내어놓았다. 그는 회개하는자들의 방문자는 수도자들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양측은 이교황의 교지를 서서히 받아들였다. 그 이후로 1 회/율수 3 회는(여러행사중의 하나로) 형제회에 사목적 방문을 할수있는 권한을 교회로 부터 부여받았다. 이권한은 현재 교회와 교회법 303 조에 의해 부여되었고 이를 상급 지휘권(Altius Mederamen)이라한다.

참조. "De Illis Qui Faciunt Pententiam (회개를 하는 사람들)" - SFO 의 회칙: 기원, 발전, 해석- Robert Stewart OFM-202 쪽

단위형제회부터 국제형제회의 영적보조자의 권한은 1 회/율수 3 회의 상급 장상을 통하여 교회로 부터 오는것이다. 이 권한은 재속 프란치스코회 (OFS)로 부터 오지 ~~않~~는다.

OFS 회헌은 영적보조자를 임명하기전에 상급 장상이나 그대리자가 해당 형제회의 평의회와 상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총영적보조자 및 관구영적보조자들은 상급 장상의 대리자들이다).

2. 어떻게 이 권한이 수행됩니까?

재속프란치스코회를 돕기위하여 교회에의해 1 회/율수 3 회에 주어진 이 권한은 재속회 회헌 조항 85.1,2; 86,1; 95.1 에서 볼 수 있다. 이 교회의 명령 (권한) (*Altius Moderamen, 상급지휘권*)은 다음의 목적을 수행하기위해 상급 장상과 그들이 위임한 수도사들(총영적보조자및 관구 영적보조자)에게 주어진다.

A) 세속 생활에서 프란치스코의 카리스마에 충실을 촉진함

B) 재속 프란치스코회의 회칙과 회헌의 준수를 보장함

C) 형제회에서 재속 프란치스코회 회원의 생활의 지원과 책임성을 제공함(OFS 회칙 제 26 조)

교회에의해 위임된 이 책임은 다음에 열거한 조처를 통하여 상급 장상에의해서 성취된다.

1) 재속 프란치스코회(OFS)의 형제회의 설립.

2) 다양한 급 (단위형제회로부터 국제 형제회)의 영적보조자를 임명.

3) 다양한 급의 형제회에 사목 방문을 실시함. (일반적으로 이러한 방문은 지구형제회의 영적 보조자에의해 시행된다. 그러나 관구장과 관구 영적보조자는 그관구에 결속된 형제회를 자유로히 따로 방문 할 수 있다.)

3. 형제회들은 1 회/율수 3 회의 특정 관구에 결속되어있다.

한 형제회는 그 주요장상이나 대리자가 공식적으로 그 형제회를 설립한 1 회/울수 3 회 관구에 결속되어 있다. 형제회 설립 문서는 적절한 자료를 포함하고 있다. 보관된 공문서에 설립문서를 갖고있는것 이 중요하다!

형제회 또는 그 형제회가 결속되어 있는 관구가 충분한 이유로 **형제회를 다른 관구로 이전**하기를 원한다면, 해당관구의 상급 장상이나 대리자에게 신청하고, 이전에대하여 해당 형제회와 대화를 하여야한다. 공식 요청은 이전을 위한 이유를 포함한다. 합의를 얻으면 공식 이전이 이루어진다. 공식 이전 사본은 서면으로 작성하고, 공문서에 보관한다.

4. 교회로 부터의 상급지휘권 (altius moderamen)에의하여 위임받은 상급 장상이나 그 대리자는 형제회를 설립하고, 영적 보조자를 임명하고 사목적 방문을 할 권한이 있습니다.

이 권한의 목적은 (프란치스코 가족의) 형제자매로서의 재속 프란치스코회 (OFS)와 관계를 맺으므로서 성취되는 것이고 **단순히 교회법 (cannon law)에 의하여 요구되는 책임을 이행함으로써 성취되는 것이 아니다.**

재속회와 관련하여 1 회/울수 3 회가 수행하는 사역은 프란치스칸 카리스마가 여러급의 영적 보조자와 평의회에의해서 굳건해지고 복돋우어지는것을 보장하는 것 이다.

영적 보조자는 형제회와 특별한 관계를 맺은 **형제와 자매**로서 봉사한다. 영적 보조자는 1 회/정규 3 회와 재속회사이에 **일치의 유대를 강화 한다**(참조, 회헌 - 조항 92.1). 예를 들면 사목적 방문은 **1 회/정규 3 회와의 친교를 위한 특별한 기회이다**(회헌 - 조항 95.1). 일치의 다른 용어는 **생명을 주는 결합/절대로 필요한 상호관계를 포함한다.**

5. 재속회 회헌 (조항 85.2)은 1 회/울수 3 회의 상급 장상(과 그 대리자)의 의무인 영적 보살핌의 정의를 내린다.

교회에의하여 1 회/울수 3 회에 맡겨진 재속회의 영적및 사목적 보살핌은 무엇보다도 수도회 총장 또는 관구장의 의무이다. 교회법 제 303 조가 언급하는 상급지휘권 은 이들에게 속한다. 상급지휘권의 목적은 재속회가 프란치스코의 카리스마에 충실 하고, 교회와의 교감및 프란치스코의가족과의 일치를 보증하는것이다. 이 가치들은 재속프란치스코 회원들을 위한 중요한 헌신을 의미한다.

Reflections on Leadership

리더십에 대한 성찰

진실은 타협할 수 없다. 우리가 한 말의 진실성은 우리의 행동에 의해 보여진다. 누군가 말하였드시 "당신이 그것을 살 수 없다면 그것을 믿지 않는 것이다!"

미래의 지도자 - Hesselbein, Goldsmith, Beckhard - 247 쪽

공동체는 동등감을 가진 자유로운 사람들이 공동 기획을 위해 자발적으로 같이 만날때 가장 쉽게 이뤄지는 현상이다. 탁월한 지도자는 자유, 자발성과 공통의 가치관을 만들어 낸다. 그들은 자주 얼굴을 맞대고 볼 수 있는 작은 조직에서 이를 가장쉽게 이룰 수 있다. 조직이 커지고, 복잡해지고, 지리적으로 분산되면, 명령체계를 늘리지 않고는 충분한 공통적 비전과 공동체 정신을 이룩하기가 더 어려워진다. 사람들이 거리, 힘과 부의 큰 차이 그리고 자원과 승진을 위한 갈등으로 분리될때 정치적 투쟁이 종종 공동체를 대신한다.

같은책 - 28 쪽

우리가 분산되어있고, 우리사이에 기술의 차이가 있고, 회칙과 회헌을 이행하는데 차이가 있으므로 우리는 공동체 생활에 있어서 어려운 문제에 직면 한다. 평의회는 자신의 책임을 명확히 아는 것이 필요하다. 공동체는 큰 회사같이 움직이지 않는다. 지도자가 법령을 전하기위해 계급제도를 만드는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 우리는더 어려운 길을 택한다.

재속 프란치스코회 지도자는 회원들로 하여금 목표와 방법을 결정하는데 관여하게하여 형제회가 우연히 정기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의 집단이 아니라 공동체가 되도록 한다. **서로의 사랑에 기초한 관계를 개발하는 것은** 임금을 위하여 기업에서 일하는 것과는 다르다.

양성은 재속회원으로하여금 삼위일체와의; 적을 포함한 모든 우리이웃과의; 그리고 자기자신에대한 온화한 사랑의 관계를 개발하기를 요구한다. 따라서 모든 프란치스칸 공동체는 다음의 복음말씀을 따른다.

'''네 이웃을 사랑해야한다. 그리고 네 원수를 미워해야한다.'고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그분께서는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당신의 해가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이에게나 불의한 이에게나 비를 내려주신다. 사실 너희가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그것은 세리들도 하지 않느냐? ...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마태 5:43-46, 48

프란치스코 회원은 현실을 우리가 사랑의삶을 사는 곳으로 인식한다. 우리는 G.K. Chesterton 이 그의책 아씨시의 성 프란치스코 (St. Francis of Assisi- Image books - 96-97 쪽)에서 묘사한 대로 사람들을 본다.

프란치스코는 각 사람에게서 여러가지 괴물을 보기보다 다양한 하느님의 모상을 보았다. 그는 어디에서나 관심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존경했다. 그는 교황이나 거지나, 시리아의 왕이나 강도까지 그가 만난 모든 사람들을 존중하고 받아들였다.

이러한 사랑이 공동체의 삶에서 실천되고 공동체를 넘어 확대되어 교회와 사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게 된다. 재속 프란치스칸 회칙이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 회원은 형제회의 정신으로 모든사람들 특히 가장 보잘 것 없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을 기뻐하며, 또 함께 하도록 할 것이다 ...

OFS 회칙 제 13 조